

# 온타리오 한인 실업인 협회 정관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온타리오 한인 실업인 협회' 라 칭한다.

### 제 2 조 위치

본 회는 본부를 광역 토론토에 두며 그 활동은 토론토 지역을 포함한 전 온타리오주로 한다.

### 제 3 조 목적

제 1 항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한인 사회 및 캐나다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항 : 본 회는 제 1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대사업으로 도매업, 제조업, 생산업 및 수출입업 등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회사 법인체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 제 2 장 회원

### 제 4 조 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 제 1 항 : 정회원

본 협회의 정회원은 캐나다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정부로부터 면허를 얻거나 등록하여 온타리오주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한인으로서 본회가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수익창출에 기여하고 본회에서 결정한 주요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단, 주요 정책 사업 범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 2 항 : 준회원

본협회의 준회원은 한인으로서 캐나다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갖고 정부로부터 면허를 얻거나 등록하여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이나 본 협회에서 결정된 주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자. 주요사업의 범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 3 항 : 명예 회원

정 회원, 준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 회 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바지 하는 자.

#### 제 4 항 : 지구협회 회원

사업을 경영하는 한인으로서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구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편의점 이외의 업종은 본부 실험 산하에 둔다.

#### 제 5 항 : 회원 자격 종료

회원 자격은 업소 매각 소유권 이전일 혹은 영업 중단일 경우 영업 마감일로 종료된다.

### 제 5조 회원의 의무

제 1 항 :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협회의 명예와 회원 상호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협회에 대해 직접, 간접적인 책임을 지고 1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명예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다.

제 2 항 : 본회의 회원은 그 가입과 동시에 본회의 부대사업체인 협동조합이 정한 주식을 소유할 경우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 제 6조 회원의 권리

정 회원만이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기타 회원은 상기 권리는 없으나 총회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 제 3장 회의

### 제 7조 회의

본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를 갖는다.

#### 제 1 항 : 정기 총회

정기 총회는 년 1 회 매 10 월중에 소집한다.

## 제 2 항 : 임시 총회

임시 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가.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 명으로 요청했을 때
- 나. 이사회에서 소집을 결의했을 때
- 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라. 임시총회는 상정된 안건 이외에는 처리할 수 없다.

## 제 3 항 : 총회 소집

회장은 최소한 총회 실시 2주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 신문에 공고 해야 하며, 또한 각 회원에게 서한으로 전달하되, 총회 소집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8 조 총회의 성립

### 제 1 항 : 정기 총회

총회는 정회원의 5% 이상을 정족수로 성립되며 의결 당시의 재석 과 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선거와 탄핵에 관한 의결은 제외된다.

### 제 2 항 : 임시 총회

총회는 정족수가 되지못했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개최되지 못했을 때는 그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소집 되어야 한다. 단, 유회된 임시총회는 동일 안건으로 재소집할 수 없다.

## 제 9 조 총회의 의결 사항

### 제 1 항 : 과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 제 2 항 : 신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 제 3 항 : 이사 선출

### 제 4 항 : 감사 선출 및 외부 감사 인준

### 제 5 항 : 회칙 개정

### 제 6 항 : 이사회보고 사항

### 제 7 항 : 감사보고 사항

### 제 8 항 : 기타

## 제 4 장 지구협의회 구성

제 10 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지구협의회를 둔다.

제 1 항 : 광역토론토 지구협의회

제 2 항 : 남서부 지구협의회

제 3 항 : 동북부 지구협의회

제 11 조 협의회의 설치 및 관리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다.

## 제 5 장 지구협회 조직

제 12 조 본회는 회원관리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구 협회를 둔다.

제 13 조 지구 협회는 본회 목적의 달성과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제 1 항 : 지구 협회는 지역 특수성에 맞추어 자체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항 : 광역토론토 지구협의회는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 14 조 지구 협회의 재정은 자체 수입과 지원금으로 한다.

제 1 항 : 지구 협회는 재정 관리를 위해 비영리 단체 등록 등 제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 2 항 : 지구 협회는 해당 지구 회원들의 회비를 징수하여 본회에 정기총회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 15 조 지구 협회 발족

제 1 항 : 새 지구 협회 발족, 통합, 폐지 등 조직 구성의 변화에 관한 사항은 관련 지구 협회장 회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인준받는다.

제 2 항 : 협회에 속한 지구 협의회는 다음과 같다.

가. 광역토론토 지구협의회

1. GTA North 지구(구 Richmond Hill, Scarborough, North York 3개 지구협회 통합)

2. GTA West 지구(구 Etobicoke, Peel, Halton/Hamilton 3 개 지구협회 통합)
3. GTA Centre 지구(구 Toronto East, Toronto West, Weston/York 3 개 지구협회 통합)

나. 남서부 지구협의회

1. KBA West 지구(구 Waterloo/Wellington, Brant County 2 개 지구협회 통합)
2. KBA South 지구(구 London, Windsor 2 개 지구협회 통합)

다. 동북부 지구협의회

1. KBA North 지구(구 Newmarket, Huronia, Owen Sound 3 개 지구협회 통합)
2. KBA East 지구(구 Kingston, Peterborough, Durham 3 개 지구협회 통합)

위, 3 개 지구협의회 외에 구 나이아가라 지구협회는 본부협회 직할 체제하에 둔다.

## 제 6 장 집행부

### 제 16 조 조직

제 1 항 : 본 회의는 아래와 같은 조직을 갖는다.

가. 회장 1 인

나. 부 회장 1 인

다. 총무 1 인

### 제 17 조 임기 및 직무

임기는 취임하는 날로부터 2 년으로 하며 직무는 아래와 같다.

제 1 항 : 회장

가.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모든 행정 및 재정을 관장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나. 회장은 총무를 임명하며 필요시에는 한시적으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임원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제 2 항 : 부 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3 항 : 총무

총무는 모든 사무를 관장하며 각 부서 및 지역 임원과 유대를 갖고 회장을 협조하며 의사록 작성, 통고, 제반 문서통신을 보관한다.

### 제 18 조 임원회

제 1 항 : 회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고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의 과반수로 가결하며, 예산 편성 및 사업 계획과 집행부에 관한 사항

제 2 항 : 총회에 보고 사항, 회칙 개정안, 의안제출 및 이사회 심의 요청사항

제 3 항 : 사무 직원 임용

제 4 항 :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

### 제 19 조 사무 직원

제 1 항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무 직원을 둘 수 있다.

가. 전무

나. 사무장

다. 상담 실장

라. 홍보 실장

마. 사무원

바. 본회가 필요로 한 부서원

## 제 7 장 이사회

###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제 1 항 : 본회 이사는 18 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 2 항 : 이사는 매 2년마다 실시되는 본부협회 정.부회장 선거에서 선출되는 회장단 2명, 지구협의회에서 추천해 총회에서 인준한 이사 6명과 감사 2명, 그리고 지구협회장으로 구성한다. 추천 이사와 감사는 특정 지구협의회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다.

제 3 항 : 지구협의회 추천과 총회 인준을 통해 선출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4 항

- 가. 이사장단은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나. 이사장의 임명으로 총무 이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 5 항 :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 위원회를 둔다.

제 6 항 : 이사장은 이사회를 주관하며 의장이 된다.

제 7 항 : 부 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 항 : 이사회는 회장의 사표를 수리할 수 있다.

#### 제 21 조 이사회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하되 개최 7일전에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1 항 : 정기 이사회는 연 4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항 : 임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한다.

- 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 나. 집행부에서 소집을 요청했을 때
- 다.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연서명으로 요청했을 때

#### 제 22 조 이사회의 성립

제 1 항 :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항 : 이사회의 유회시에는 이사장이 1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

#### 제 23 조 이사회의 의결 및 심의 사항

- 제 1 항 : 이사장, 부 이사장 선출
- 제 2 항 : 선거관리위원 선출
- 제 3 항 : 예산 결산 사업에 관한 심의 및 의결
- 제 4 항 : 감사보고
- 제 5 항 : 재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방침
- 제 6 항 : 회비 및 기타 기금 책정

제 7 항 : 상.벌에 관한 사항

제 8 항 : 회칙 개정안 및 내규 제정

제 9 항 : 집행부가 심의를 요청하는 기타 사항

제 10 항 : 부대 사업 및 기타 사업의 창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 11 항 : 새 지구 협회 발족과 제 조정에 관한 인준

제 12 항 : 회원의 자격 및 상실에 대한 심의 의결

제 13 항 :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 8 장    감사 위원회

### 제 24 조    감사 위원회의 구성

제 1 항 : 감사 위원회는 일반 감사 2 명, 외부 감사 1 명으로 한다.

제 2 항 : 일반 감사는 결원이 발생할 시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제 3 항 : 외부 감사는 공인 회계사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4 항 : 일반 감사는 자동 이사가 된다.

제 25 조    감사는 다음 사항을 감사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 1 항 : 사업 및 행정 감사

제 2 항 : 재정 감사

제 3 항 : 필요한 경우 지구 협회 제반 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

## 제 9 장    선거

### 제 26 조    선거방법 및 실시

제 1 항 : 본 회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 2 항 : 본 회 정·부회장 선거는 회기말이 지난 후 30 일 이내에 실시한다.

## 제 27 조 피 선거권

제 1 항 : 본 회의 정·부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 15 일전에 본 회 정회원 20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 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2 항 : 피 선거권자의 제한

- 가. 온타리오주 법과 캐나다 연방법에 6 개월 이상 형을 받은 자
- 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크게 끼친 자

## 제 28 조 선거 관리 위원회

제 1 항 : 선거 관리 위원회는 이사 중에서 3 명을 선출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2 항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부회장과 이사를 선출하는 선거를 관리한다.

제 3 항 : 선거 관리 위원회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제 4 항 :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 세칙에 준하며 선거 세칙은 이사회에서 제정한다.

## 제 10 장 재정

제 29 조 본 회 회계연도는 매 8 월말로 정한다.

제 30 조 본 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회비, 특별 회비, 찬조금, 보조금과 부대 사업 및 기타

사업으로 얻어지는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1 조 본 회가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없는 예산을 집행하거나, 책정된 항목 예산이라 하더라도 \$10,000 이상을 초과 집행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동의를 득해야 한다.

## 제 11 장 상·벌

제 32 조 상·벌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1 항 : 본 회의는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상·벌 분 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2 항 : 본 회의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 처분으로 구분되며 상·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3 항 : 본 회의에 명예훼손, 재산상 손실, 발전에 저해 요인을 초래했을 경우, 징계 또는 경고, 제명 처분을 의결할 수 있다.

## 제 12 장 탄핵

제 33 조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 및 부 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제 1 항 : 본 회의 명예 또는 재정적 손실을 크게 끼쳤을 때

제 2 항 :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제 3 항 : 본 회의 탄핵은 정기 또는 임시 총회에서 이를 실시하며 정회원 재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3 장 부대 사업 및 기타 사업

제 34 조 본 회의 회장단 3명과 이사장단 3명은 본 회의 설립, 혹은 운영하는 모든 부대 사업과 기타 사업에 자동으로 이사가 된다.

제 35 조 본 회의 회장단 및 이사장단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기업체의 장을 출석시켜 제반 업무에 관한 보고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제 36 조 <실험 뉴스>는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회장, 이사장, 편집장 외 3인으로 구성된 <편집 및 심의 위원회>를 상설하여 운영한다.

## 부칙

제 1 항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2 항 :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집행부, 이사회 또는 정회원 30 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 3 항 :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4 항 : 본 회가 추진하는 모든 협상에는 회장의 주관 아래 2 이상의 임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항 : 본 회칙은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보관하며 그 용어 해설에 차이가 있을 때는 국문의 해설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항 : 본 협회의 재산 관리는 별도 재산 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 7 항 : 본 회의 원활하고 공정한 재정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재정 관리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 8 항 : 본 협회의 사무실 관리는 별도의 직무 및 인사 규정에 의한다.

제 9 항 : 협회 회관 등의 재산 소유권은 협회에 있다.

제 10 항 : 경과 조치(2008 년 10 월 14 일)

본 정관 20 조에 대하여 구정관에 따라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2009 년도 정기총회까지 임기를 보장한다.

제 11 항 : 경과조치 (2014 년 10 월 28 일)

2년 임기의 직선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조항은 2015년 본부협회 정.부회장 선거 시점부터 발효된다. 따라서, 임기의 형평성을 고려해 2014년 임기가 종료되는 이사 12인의 공석은 그대로 유지하며 다만 감사는 임기 1년의 3인을 2014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2 항 : 경과조치 (2018 년 10 월 31 일)

본 정관 제 7 장 20 조 1 항 및 2 항과 관련해 기존 직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019년 총회에서 새 직선 이사와 감사가 선출되는 시점까지는 임기를 보장한다.

제 13 항 : 총회특별결의 사항

협회 해산과 이에 따른 자산 매각 등 청산에 관한 사항은 정회원 전체의 결의를 요하는 특별결의 사항이며 이밖의 특별 결의가 필요한 사안은 이사회 내규에 정한다.

제 14 항 : 이해상충에 관한 사항

이해 상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내규에서 정한다.

## 개정일자

1986년 10월 29일 정기 총회 시 개정

1988년 10월 27일 정기 총회 시 개정

1989년 8월 1일 임시 총회 시 개정

1990년 10월 30일 정기 총회 시 개정

1991년 10월 29일 정기 총회 시 개정

1992년 10월 30일 정기 총회 시 개정

1993년 8월 19일 임시 총회 시 개정

1994년 10월 28일 정기 총회 시 개정

1995년 8월 10일 임시 총회 시 개정

1997년 10월 31일 정기 총회 시 개정

2001년 4월 19일 임시 총회 시 개정

2006년 9월 27일 임시 총회 시 개정

2008년 10월 14일 임시 총회 시 개정

2009년 10월 20일 정기 총회 시 개정

2014년 10월 28일 정기 총회 시 개정

2018년 10월 31일 정기 총회 시 개정

2019년 10월 16일 정기 총회 시 개정

2022년 12월 16일 정기 총회 시 개정

2023년 11월 7일 정기 총회 시 개정